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그 동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7099호, 2020. 3. 24.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2·3, 별표7)

- 축산법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을 인증하기 위해 인증의 대상이 되는 축산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자 함

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4~9, 별표8)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를 하며, 인증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인증의 신청, 심사, 재심사, 발급 등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0·11)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매년 갱신하거나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 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2)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인증사업자가 인증을 유지할 때 생산 또는 취급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등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마.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3, 별표9·10)
- 무항생제축산물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4, 별표11)
- 무항생제축산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인증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가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인증 취소, 인증표시 제거·사용정지, 판매금지·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사.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5~20)
- 무항생제축산물의 원활한 인증 및 관리 내실화를 위해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지정심사, 지정 갱신 절차 등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아. 무항생제문구와 유사한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22)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23·24)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생산·판매·유통 중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에 대한 조사의 종류, 내용, 방법 등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조사결과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 압류 및 조치명령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차.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25)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사실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51조, 별표13)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등과 관련된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관련 검토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개정안, 별첨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법안담당

직 위	성 명	사무실 전화	HP	E-mail
축산정책국장	이주명	044-201-2301	010-6458-5015	leejm66@korea.kr
축산환경자원과장	정경석	044-201-2351	010-3587-4059	godjung7@korea.kr
사무관	남기현	044-201-2352	010-4195-4097	khnam@korea.kr
주무관	김소연	044-201-2354	010-6311-0092	young454@korea.kr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등급화”를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으로 한다.

제47조의2를 제47조의26으로 하고,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2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

- 가. 소(한우, 육우), 면양·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 닭, 오리 및 사슴에서 생산된 식육
- 나. 소(젖소) 및 염소에서 생산된 시유(시판우유)
- 다. 닭, 오리 및 메추리에서 생산된 알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사업자가 취급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①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4(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신청)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인증품 취급 계획서
2. 별표 8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생산,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24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등의 허가증·신고필증

제47조의5(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절차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제47조의4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47조의8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
3. 제47조의10에 따른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47조의4, 제47조의8, 제47조의10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사업장(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6(재심사 신청 등) ① 인증을 받지 못하여 법 제42조의3제5항에

다른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서식의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인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42조의3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재심사 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47조의5를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인증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거나 생산 또는 취급 과정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등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인증심사한 자료로 재심사 할 수 있다.

제47조의7(인증서의 발급)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8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47조의4에 따른 인증 신청: 인증심사
2.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재심사
3. 제47조의8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 인증 변경승인 심사
4. 제47조의10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승

인 신청: 인증 갱신심사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②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가 별표 7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품의 대량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내역이 적힌 별지 제60호서식의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를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47조의8(인증 변경승인 등) ① 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품목(별표 7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 품목을 같은 호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인증 사업장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 원본
2.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7조의9(인증서의 재발급) 제47조의7제1항 또는 제47조의8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사유서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헐어 못 쓰게 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의10(인증의 갱신 등) ① 법 제4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갱신 및 인증품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53호서식의 인증신청서 또는 제54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5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인증품 취급 계획서
2. 별표 8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5.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24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

처리업 등의 허가증·신고필증

- ② 법 제42조의3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우수”, “양호”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을 말한다.
- ③ 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인증기관 외에 “보통”, “미흡” 등급을 받은 동일한 인증기관에서는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받을 수 없다.
- ④ 인증사업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2조의4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인증의 신청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 미리 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반환받아 인증업무를 새로 맡게 된 다른 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 ⑤ 인증기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연장을 받지 아니하면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의11(인증의 갱신 등 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심사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는 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등 재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6을 준용한다.

제47조의12(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실적을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의13(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① 법 제42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무항생제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무항생제표시

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및 생산지를 별표 10의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 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판 또는 풋말에 무항생제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항생제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14(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처분의 기준·절차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7조의15(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7조의16(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42조의8제1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17(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42조의8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 범위 :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에 따른 인증.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로 정한다.

제47조의18(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7조의15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47조의16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4호 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

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규정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19(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① 법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인증기관 지정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18을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의20(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를 영 제17조의3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21(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신고 등) ①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②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8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

6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2. 인증업무규정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고서를 수리한 때와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7조의22(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① 법 제42조의9제1항 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는 제품의 명칭·특성·생산방법·원재료 정보·품질정보 등을 나타내거나 알리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무항생제”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2. “Non Antibiotic” 등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보증의 표시는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의 표시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인증·보증의 표시

3.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증·보증의 표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23(인증품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42조의10 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과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법 제42조의10제1항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 판매장 또는 인증사업자등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
2.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하는 수시조사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잔류물질 검정조사
2. 인증품의 표시사항, 생산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기준에 맞는지 등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

시하는 다음 각 호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조사 공무원증

2.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표시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인증심사원증

④ 법 제42조의10제5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인증사업자등에게 그 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42조의10제5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인증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6호 서식의 인증품 재검사 신청서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조사 결과를 통보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재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 30일 이내에 동일한 시료(생산장소·품목·시기가 동일한 시료에 한정한다)에 대해 발급 받은 검사

성적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검사항목이 동일한 검사성적서에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

2. 조사공무원 또는 인증심사원이 인증품의 시료수거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인증품의 시료수거 과정에 오류가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항제1호에 따른 재검사 : 검사 후 보관중인 시료에 대한 검사

2. 제5항제2호에 따른 재검사 :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검사

3. 제5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시료를 검사

⑦ 인증사업자등은 제6항에 따라 실시한 재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증품 조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24(인증품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압류 및 공표) ① 법 제42조의 10제8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 세부 표시사항 변경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42조의10제10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해당 인증품을 압류한 때에는 인증사업자등에게 별지 제67호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압류 대상 인증품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10제11항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25(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①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인증품 취급 계획서

2. 승계 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인증서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4.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을 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제47조의18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다.
별표 7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서식 부터 별지 제6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제47조의3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나. “합성농약”이란 화학물질을 원료·재료로 사용하거나 화학적 과정으로 만들어진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절제, 기피제, 유인제, 전착제 등의 농약을 말한다. 다만,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만들어진 농약은 제외한다.

다.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동물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말한다.

라. “사육장”이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시설이나 방목, 운동장을 말한다.

마.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바. “생산자단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작목회 등 영농 조직, 협동조합 또는 영농 단체를 말한다.

2. 무항생제축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8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수의사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을 포함한다)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인증사업자는 4년에 1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table border="1"> <tr> <td>과정명</td><td>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교육</td></tr> <tr> <td>교육주기</td><td>2년에 1회</td></tr> <tr> <td>교육시간</td><td>2시간 이상</td></tr> <tr> <td>교육기관</td><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tr> </table>	과정명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과정명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축사 및 사육	1) 축사는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 환경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축사의 사육 밀도를 유지								

조건	• 관리할 것 2) 무항생제가축과 일반가축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할 것 3) 합성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축사소독제와 해충의 구제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만 사용하고 그 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5) 쥐 등 설치류로부터 가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물리적 장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가축이나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6) 가축 사육시설 및 장비(사료 보관·급이 및 음수 관련 시설을 포함)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 및 소독하여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 방법	1) 교배는 자연교배,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기법으로 하고, 번식호르몬 처리는 하지 않을 것. 다만, 번식장애 가축의 치료와 수정란 이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번식호르몬을 사용할 수 있다.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 젖을 땀 직후의 가축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정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																																				
라. 전환기간	일반농가가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축을 무항생제농장으로 입식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최소 사육기간) 이상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 것 <table><tr><th>가축의 종류</th><th>생산물</th><th>전환기간 (최소 사육기간)</th></tr><tr><td>한우·육우</td><td>식육</td><td>입식 후 12개월</td></tr><tr><td rowspan="2">젖소</td><td>시유 (시판우유)</td><td>1) 착유우는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입식 후 6개월</td></tr><tr><td>식육</td><td>입식 후 5개월</td></tr><tr><td rowspan="2">면양·염소</td><td>시유 (시판우유)</td><td>1) 착유양은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입식 후 6개월</td></tr><tr><td>식육</td><td>입식 후 5개월</td></tr><tr><td>돼지</td><td>식육</td><td>입식 후 5개월</td></tr><tr><td>육계</td><td>식육</td><td>입식 후 3주</td></tr><tr><td>산란계</td><td>알</td><td>입식 후 3개월</td></tr><tr><td rowspan="2">오리</td><td>식육</td><td>입식 후 5주</td></tr><tr><td>알</td><td>입식 후 3개월</td></tr><tr><td>메추리</td><td>알</td><td>입식 후 1개월</td></tr><tr><td>사슴</td><td>식육</td><td>입식 후 12개월</td></tr></table>	가축의 종류	생산물	전환기간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12개월	젖소	시유 (시판우유)	1) 착유우는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입식 후 6개월	식육	입식 후 5개월	면양·염소	시유 (시판우유)	1) 착유양은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입식 후 6개월	식육	입식 후 5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5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1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12개월
가축의 종류	생산물	전환기간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12개월																																			
젖소	시유 (시판우유)	1) 착유우는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입식 후 6개월																																			
	식육	입식 후 5개월																																			
면양·염소	시유 (시판우유)	1) 착유양은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입식 후 6개월																																			
	식육	입식 후 5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5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1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12개월																																			

마. 사료 및 영양 관리	1) 무항생제가축에는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항생제·성장촉진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지 아니할 것 3) 가축에게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상시 급여할 것
바.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1)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가축에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지 않을 것. 다만, 가축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나목5)의 물질과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질병 치료용 동물용의약품은 출생, 분만, 부화, 거세(去勢) 등 다음 표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질병 취약 시기에 한해 사용할 것

가축의 종류	생산물	질병 취약 시기
한우·육우	식육	가) 출생 후 3개월 이내 나) 분만 다) 거세(출생 후 10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젖소	시유 (시판우유)	가) 출생 후 3개월 이내 나) 분만 다) 건유기
면양·염소	식육	가) 출생 후 1개월 이내 나) 분만 다) 거세(출생 후 1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유 (시판우유)	가) 출생 후 1개월 이내 나) 분만
돼지	식육	가) 출생 후 5주 이내 나) 분만 다) 거세(출생 후 1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육계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산란계	알	부화 후 3주 이내
오리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알	부화 후 3주 이내
메추리	알	부화 후 1주 이내
사슴	식육	가) 출생 후 1개월 이내 나) 분만 다) 거세(출생 후 1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별 질병 취약 시기가 아닌 시기에 질

	병이 발생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무항생제가축에서 격리하고 일반가축으로 판매할 것 4) 성장촉진제, 호르몬제는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5) 1)부터 4)까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처방전을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 이상의 기간 동안 사육한 후 출하할 것. 다만, 처방대상이 아닌 동물용의약품을 1)의 단서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사. 운송·도축·가공 과정의 품질관리	1)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2) 합성농약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아. 가축분뇨의 처리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할 것

3.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또는 판매)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8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무항생제축산물 취급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인증사업자는 4년에 1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table border="1"> <tr> <td>과정명</td><td>무항생제축산물 취급 교육</td></tr> <tr> <td>교육주기</td><td>2년에 1회</td></tr> <tr> <td>교육시간</td><td>2시간 이상</td></tr> <tr> <td>교육기관</td><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tr> </table> 3)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분석 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과정명	무항생제축산물 취급 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과정명	무항생제축산물 취급 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작업장 시설기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작업장일 것								
다. 원료관	원료의 사용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원료에 대한 납품서								

리	· 거래인증서·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라. 취급방법 등	1) 소분·저장·포장·운송·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에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 및 비인증품이 혼입(混入, 한데 섞거나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생산물의 저장·포장·운송·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마. 인증품의 품질관리 등	1)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2) 합성농약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3) 인증품에는 제조단위번호(인증품 관리번호),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할 것

4.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관리	사업자는 거래하려고 하는 인증품의 생산, 취급과 관련된 내역을 제공할 것
나. 수량관리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급실적의 보고 내용과 일치할 것

[별표 8]

경영 관련 자료(제47조의4제2호 관련)

경영 관련 자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

- 가.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일자별 가축 구입 마리수·번식 마릿수, 가축 연령 및 가축 인증 사항
- 나.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사료명, 사료의 종류, 일자별 생산량·구입량·급여량, 사용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자재구매 영수증
- 라.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 등 자재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약품명, 일자별 구매·사용량·보관량, 구매영수증
- 마. 질병의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 의사 처방전
- 바. 퇴비·액비의 발생·처리 사항을 기록한 자료: 기간별 발생량, 처리량, 처리방법
- 사. 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 출하처별 거래 내용 및 도축·가공업체에 관하여 기록한 자료: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출하처별 출하량, 일자별 도축·가공량, 도축·가공업체명
- 아.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하되,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취급자

- 가.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거래처별 판매량
- 나. 인증품의 취급(저장, 포장, 운송 또는 판매) 과정에 대한 자료
- 다.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하되, 신설된 사업장으로 축산물의 취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최소 1개월 이상)에서 기록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별표 9]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기준(제47조의13제1항 관련)

1. 표시 도형

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번호:

Certification Number:

나. 작도법

1) 도형 표시

가)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 \times W$ 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times W$ 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제1호다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무항생제”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로 표기할 수 있다.

3)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4)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5) 표시 도형 내부의 “무항생제”, “(NON ANTIBIOTIC)”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6)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B100으로 한다.

7)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8)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9)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2. 표시문자

구분	표시문자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 무항생제 축산물, 무항생제 ○○ 또는 무항생제 사육 ○○

[별표 10]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47조의13제2항 관련)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 사업자의 인증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품의 생산자가 포장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인증서에 기재된 명칭대로(단체의 경우 단체명) 표시하되, 단체로 인증 받은 경우로 개별 생산자명을 표시하려는 경우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괄호로 표시 할 수 있다.
- 2) 전화번호: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판매원의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 3) 포장작업장 주소: 해당 제품을 포장한 작업장의 주소를 번지까지 표시한다.
- 4) 인증번호: 해당 사업자의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 5) 생산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2.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

살아 있는 가축을 거래하는 경우, 인증품을 포장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산물로 거래하는 경우 및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
- 2) 공급하는 자의 명칭과 공급받는 자의 명칭
- 3)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거래일

3. 표시판 또는 풋말로 표시하는 방법

가. 포장하지 않고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 판매대의 표시판 또는 풋말에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려는 경우 인증품이 아닌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판매대, 판매구역 등을 구분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표시사항

무공해,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1]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제47조의14 및 제47조의24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 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다.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
- 라.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정지·판매금지, 회수·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인증품 및 해당 제품(이하 이 표에서 “인증품등”이라 한다)을 적용하되, 인증품등의 인증표시 정지와 인증품의 판매정지의 처분은 생산기간과 인증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마. 제2호의 인증품등은 다음 1) 및 2)와 같다. 다만, 해당 인증품등에 다른 인증품등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등과 그 혼합된 다른 인증품등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 1)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
 - 2)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과 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 동일한 인증품등
- 바. 같은 위반행위가 제2호의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인증사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의7 제1항제1호	인증취소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의7 제1항제1호	인증취소	
3)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의7 제1항제2호		

가) 공통기준 (1)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2)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인증취소	
나) 무항생제축산물 (1)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4)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을 사용한 날부터 휴약기간의 2배 기간을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 (5) 출생, 분만, 부화, 거세(去勢) 등 별표 7 제2호바목2)에서 정하는 가축의 종류별 질병 취약 시기 외의 시기에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고 격리조치를 하지 않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하여 성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 (6) 무항생제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7) 무항생제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8) 합성농약을 가축에 사용한 경우 (9) 무항생제축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시정명령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다) 취급자 (1) 무항생제축산물에 무항생제축산물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2) 무항생제축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가) 납품 받은 인증품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검출된 경우 (나) 인증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검출된 경우 또는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3)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의7 제1항제3호	인증취소	
5)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2조의7 제1항제4호	인증취소	
6) 인증사업자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의10제8항	시정명령	

나. 인증품등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 물질이 검출되는 등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때	법 제42조의10제8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 표시 제거·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판매 정지
2)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표시 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42조의10제8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 표시 변경

3) 인증품에서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법 제42조의 10제8항	해당 인증품의 회수 · 폐기 또는 판매금지 · 판매정지
4)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법 제42조의 10제8항	해당 제품의 광고 금지 및 인증표시 제거·정지

3. 행정처분절차

가. 제2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을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2호나목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해당 인증품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회수·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 따른 회수·폐기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47조의16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17065)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인증심사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다만 인증기관 지정 이후에는 인증업무량 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인증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일 것

다. 인증기관 임원 또는 직원(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 중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라.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마.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도록 인증기관(대표, 인증심사원 등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

- 1) 농업용 자재의 제조·유통·판매
- 2) 무항생제축산물의 유통·판매
- 3)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자문(諮問) 등의 서비스 제공

2. 시설

가.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지정기준에 따른 검정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나. 외부에 위탁하여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검정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수탁기관이 해당 분야의 공인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았는지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비치할 것
- 2)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의 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기관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중지할 것
 - 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계측 및 분석을 실시한다는 사항
 - 나) 계측 및 분석 관련 자료와 해당 시료를 보관하고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수탁기관이 검사 관련 기록을 위조·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 위탁을 중지할 것

3.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인증업무 실시방법

나. 인증의 사후관리방법

다. 인증 수수료

라.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바.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 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사.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아. 인증심사, 인증 결정, 인증활동 등 인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자. 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의 승인·유지·확대·취소 등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상업적이나 재정적 등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

차.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인증심의에 관한 사항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다음 사항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나.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13]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출장비

- 1)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 또는 공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다. 심사·관리비

- 1)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조사 및 그 밖에 심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에 따른 심사·관리비에 대한 표준관리비를 정하여 고시·징수하고, 인증기관에게 권장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사항 :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비용은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납부 대상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가.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갱신·연장하려는 자	5만원	공통기준 적용	공통기준 적용
나.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만원	공통기준 적용	공통기준 적용 (현장심사를 한 경우에 한함)
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10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9만원)	공통기준 적용	없음

3. 납부기간 등

가.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인증심사 또는 공시 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 출장비와 심사·관리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지정 취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 또는 공시 업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수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라. 수수료의 납부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 받아야 하며 구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인증신청서(생산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신청단위 [] 개인, [] 법인, [] 단체	
	성명(단체명)	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인증구분 - 무항생제축산물 생산자	
	신청구분 [] 최초 신청, [] 갱신 신청,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축산법」 제42조의3, 제42조의4 및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47조의4, 제47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 귀하

첨부 서류	1. 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1부 2. 규칙 별표 8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생산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6.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수수료 규칙 제51조 및 별표 13 에 따른 수수료
----------	--	------------------------------------

동의서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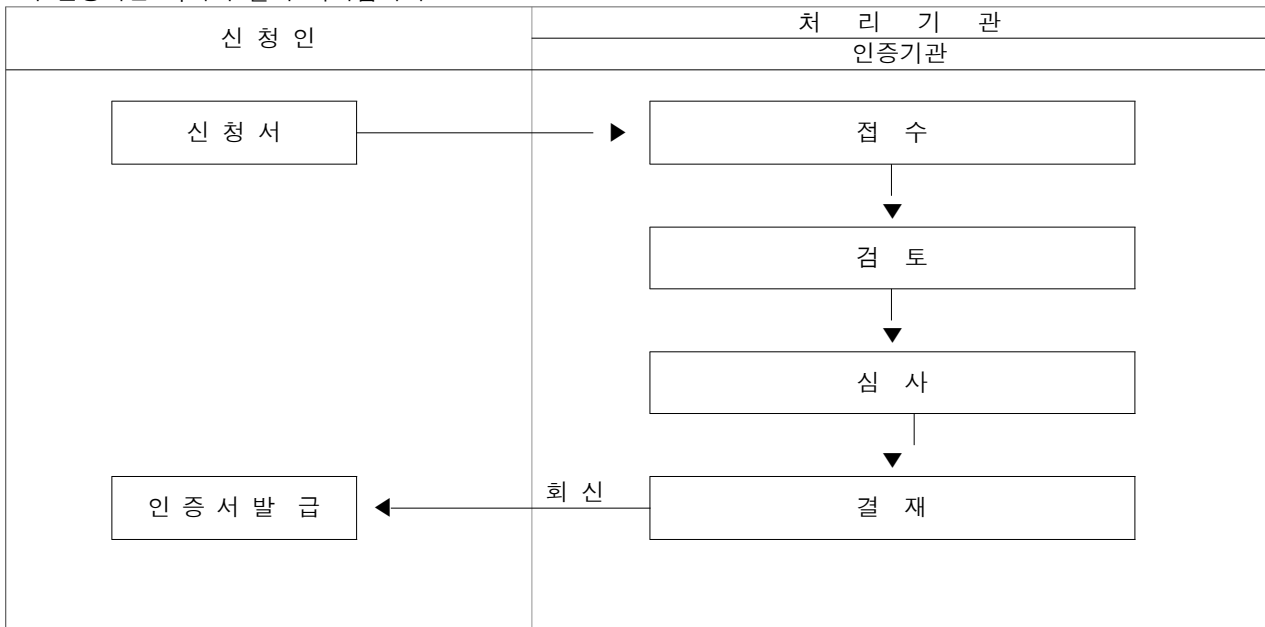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개인과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1가구를 1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 농어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8.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생산계획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합니다.
9. 첨부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는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첨부서류 중 제5호는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인증신청서(취급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
------	------	------	-----

신청인	신청단위	[] 개인, [] 법인, [] 단체
	성명(단체명)	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인증구분 - 무항생제 축산물 취급자: [] 저장자, [] 포장자, [] 운송자, [] 판매자
	신청구분 [] 최초 인증 신청, [] 갱신 신청,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축산법」 제42조의3, 제42조의4 및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47조의4, 제47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인증품 취급 계획서 1부 2. 규칙 별표 8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6.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24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등의 허가증·신고필증	수 수 료 규칙 제51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
------	---	----------------------------------

동 의 서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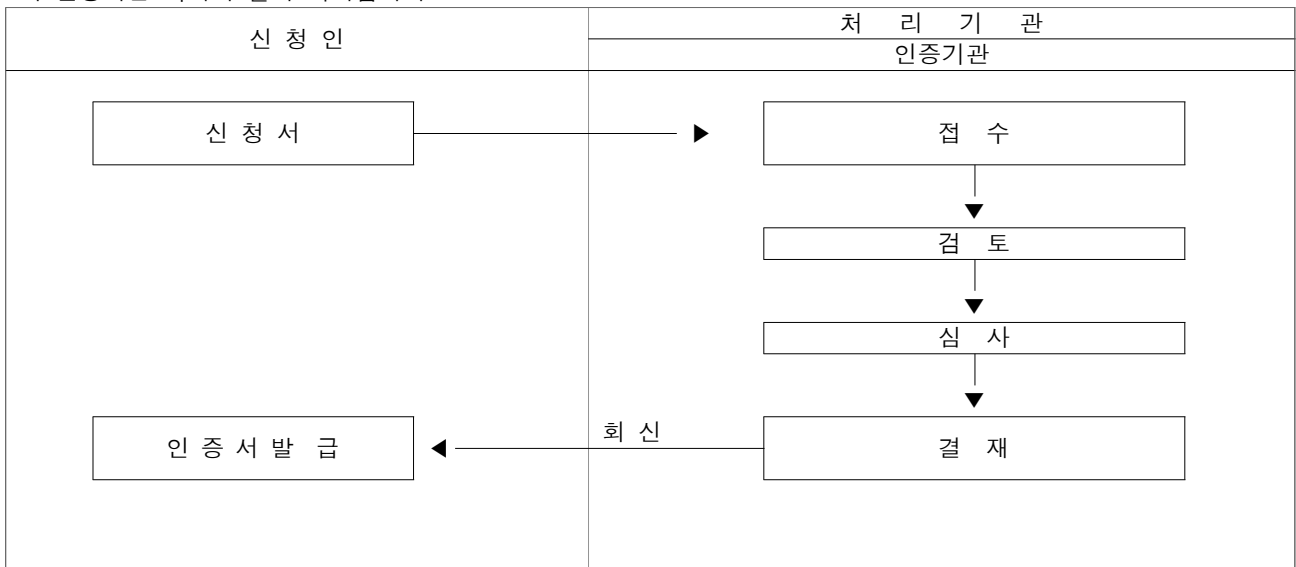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개인과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1가구를 1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유통업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8.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취급계획서는 취급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9. 첨부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는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첨부서류 중 제5호는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인증품 생산계획서							
1. 신청인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2. 신청 내용							
구 분	사 육 시 설			비 고			
	소재지	지 번	면적(㎡)				
사 육 장 목 초 지 사 료 포 분뇨처리시설 기타시설 등							
3. 사육 규모 및 생산계획량							
품목별	사육규모(두수, 군수)						생산계획량 (마릿수, 갯수, ℓ, kg)
	계	성축	육성축	자축	군수	벌통수	
4. 일반원칙 또는 경영관리 5. 사육장 및 사육 조건 6. 자급사료 기반 7.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8. 전환기간 9. 사료(먹이) 및 영양관리 10.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1.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2. 가축분뇨의 처리 등							
※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및 별표 7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인증품 취급 계획서					
1. 신청인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2. 신청 내용					
구 분	작업장 시설			비 고	
	소재지	지 번	면적(㎡)		
3. 취급 계획량(kg)					
품목명	계획량	품목명	계획량	품목명	계획량
4. 취급방법					
5. 해충 및 병원균 관리					
6.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및 별표 7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인증 재심사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성명(단체명)	생산자 수 (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심사 신청항목
	재심사 신청사유

「축산법」 제42조의3제5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

귀하

첨부자료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재심사 신청항목은 인증기관에서 부적합 사유로 통보한 사항 중 재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기재합니다.

인증번호: 제 호			
인 증 서			
《생산자용》			
인증 구분		유효기간	
생 산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인증 품목		인증 면적	
인증 부가조건			
「축산법」 제42조의3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무항생제축산물의 인 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 직 인			

인증번호: 제 호			
인 증 서 《취급자용》			
인증 구분		유효기간	
취 급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취급 축산물의 산지	※ 취급자에게 발급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품목			
인증 부가조건			
「축산법」 제42조의3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무항생제 축산물의 취급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 직 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인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당 초	변 경	

「축산법」 제42조의3제8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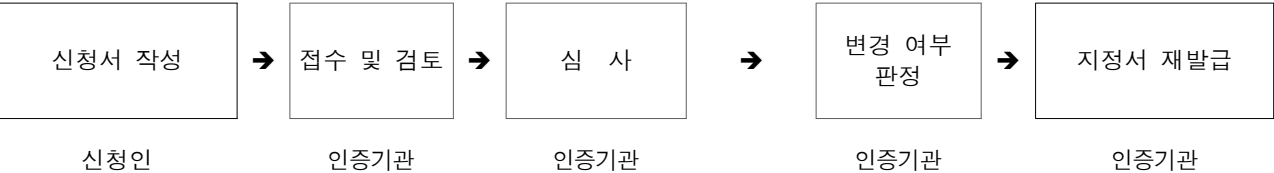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 원본 2.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규칙 제51조 및 별표 13 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인증품 생산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2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실적을 제출합니다.

인증기관

귀하

신고인	법인(조직)명		생산자 수(작업장 수)			
	대표자 성명		인증번호			
	연락처		제출일			
출 하 내 용	1. 출하기간:					
	2. 인증구분	3. 품목	4. 계획량(kg)	5. 내수/수출	6. 출하처/국가명	7. 출하량(kg)

작성 방법

1. 출하기간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인증품 출하기간을 월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1~12월, 5~12월, 7~8월 등)
2. 무항생제축산물, 취급자 중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품목에는 인증받은 품목(젓소시유, 육계식육 등)을 모두 적습니다.
4. 계획량은 인증, 갱신 신청 시 작성하여 제출한 계획량을 적습니다.
5. 국내에 판매한 건은 내수, 해외로 판매한 건은 수출로 적습니다.
6. 내수인 경우 출하처는 ①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농협유통 등), ②공공급식(학교급식, 군급식 등), ③일반급식(기업체 등), ④전문유통업체(생협 등), ⑤로컬푸드매장, ⑥도매시장, ⑦가공(취급)업체 ⑧직판(온라인, 전화주문 등), ⑨기타(직접 기재) 중에서 한 가지를 적고, 수출인 경우 국가명(예시: 미국, 프랑스, 베트남 등)을 적습니다.
7. 출하량은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적습니다.

※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인증기관 [] 지정 [] 지정 갱신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	------	------	-----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국적(외국인만 해당)	
	소재지	전화번호	

설 립 목 적	
설 립 연 월 일	
인증업무의 범위	☐ 무항생제 축산물 ☐ 취급자

「축산법」 제42조의8제2항·제3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47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정(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 규칙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 지정서(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규칙 제51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
------	---	--------------------------------

작성 방법

-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법인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은 국적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소재지란에는 기관의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번역(음역을 하여야 하며, 훈역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한 신청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인증업무의 범위란에는 규칙 제47조의17의 인증업무의 범위 중 수행하려는 범위를 업무와 지역으로 각각 표시합니다.

지정번호: 제 호

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3. 소재지:
4. 인증업무의 범위:
5. 유효기간:

「축산법」 제42조의8제1항,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2항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이
의
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 인

인증기관 지정내용 [] 변경신고서
[] 변경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신고 3일 변경승인 신청 10일
------	-----	------	------------------------

신고인	기관명	지정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변경 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신고	[] 인증기관 명칭, 인력 및 대표자 []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승인 신청	[] 인증업무의 범위 [] 인증업무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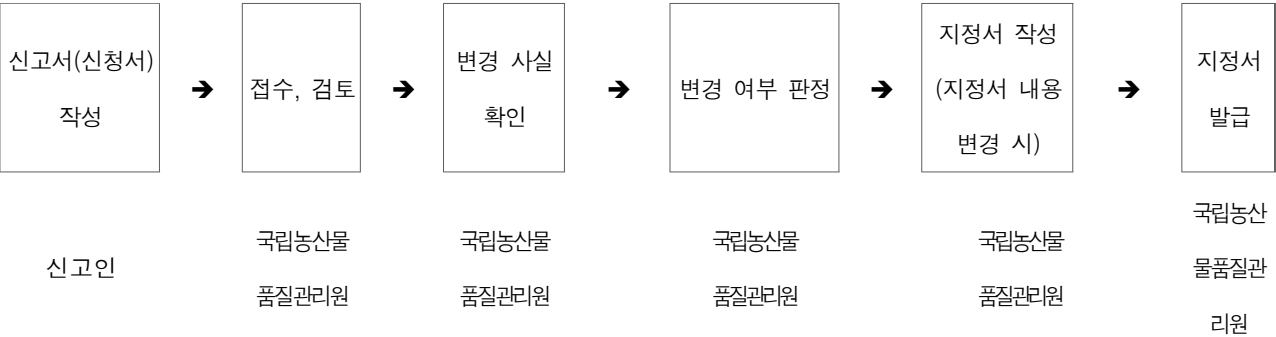
「축산법」 제42조의8제5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1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변경승인 신청)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신고의 경우: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변경내용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

처리절차



인증품 재검사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성 명(단체명)	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재검사 의뢰 유해물질	수거장소

재검사 신청 사유	
-----------------	--

「축산법」 제42조의10제5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품의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귀하

첨부자료	재검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2.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재검사 신청항목의 재검사 의뢰 유해물질은 부적합 사유로 통보한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성분 등 재검사가 필요한 항목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인증품 압류증

기호	번호	무항생제축산물			
압류품 인증사업자의 상호·소재지		성명		상호	
		인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압류품 제조가공자(취급자)의 상호·소재지		성명		상호	
		인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압 류 품 명					
인증유효기간					
압 류 제 품 유 형					
압 류 수 량					
압 류 사 유					
압 류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압 류 장 소					
압 류 확 인 자		(서 명 또는 인)			

「축산법」 제42조의10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4제2항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압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	------	------	-----

승계인 []개인 []법인 []단체	성명(개인사업자인 경우)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 법인, 단체의 주소	생산자(취급자) 수

승계 내용	인증 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 면적
	인증 품목
	승계 사유 [] 상속 [] 양수(讓受) [] 합병 [] 그 밖의 사유

「축산법」 제42조의11제2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47조의2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인증품 취급 계획서 1부 2. 인증사업자 승계 사실 증명자료 1부 3. 승계받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서 1부	수수료 없음
------	---	-----------

동 의 서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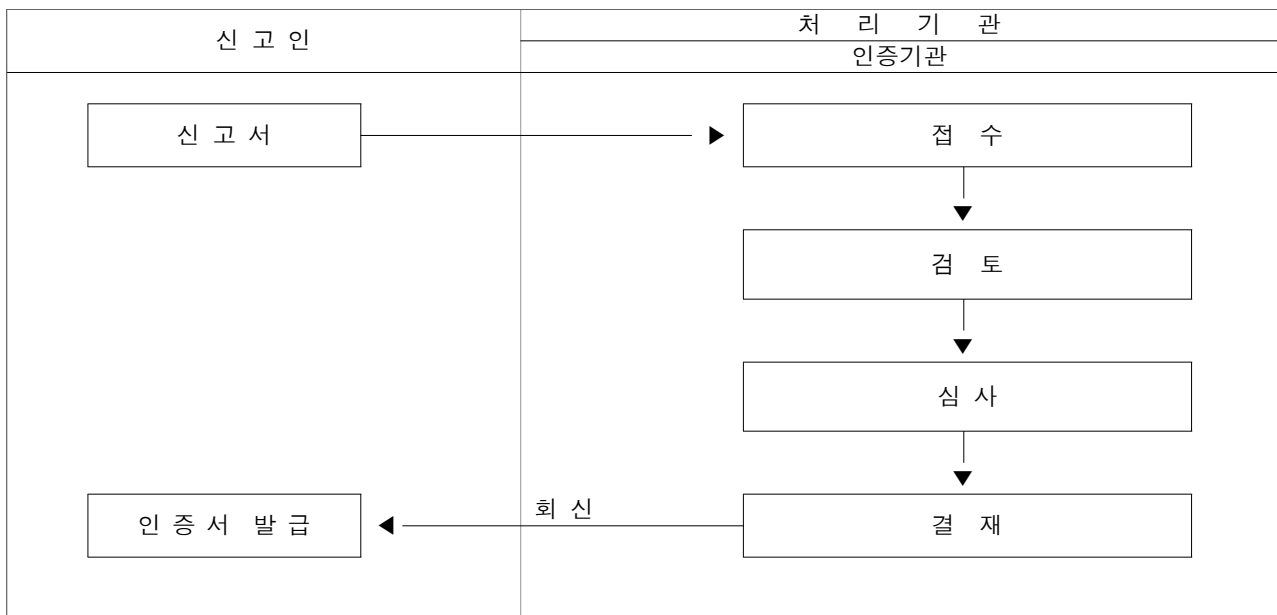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생산자(취급자) 수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를 가구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 농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인증번호란에는 승계받은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7.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8. 인증 품목은 승계받은 인증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9. 승계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취급계획서는 생산자 또는 취급자별로 작성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인증기관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승계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국적(외국인만 기재합니다)	
	소재지	전화번호	

설 립 목 적	
승계 연월일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승계 사유	[] 양수(讓受) [] 합병 [] 그 밖의 사유()

「축산법」 제42조의11제2항 또는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47조의2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 규칙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1부 4.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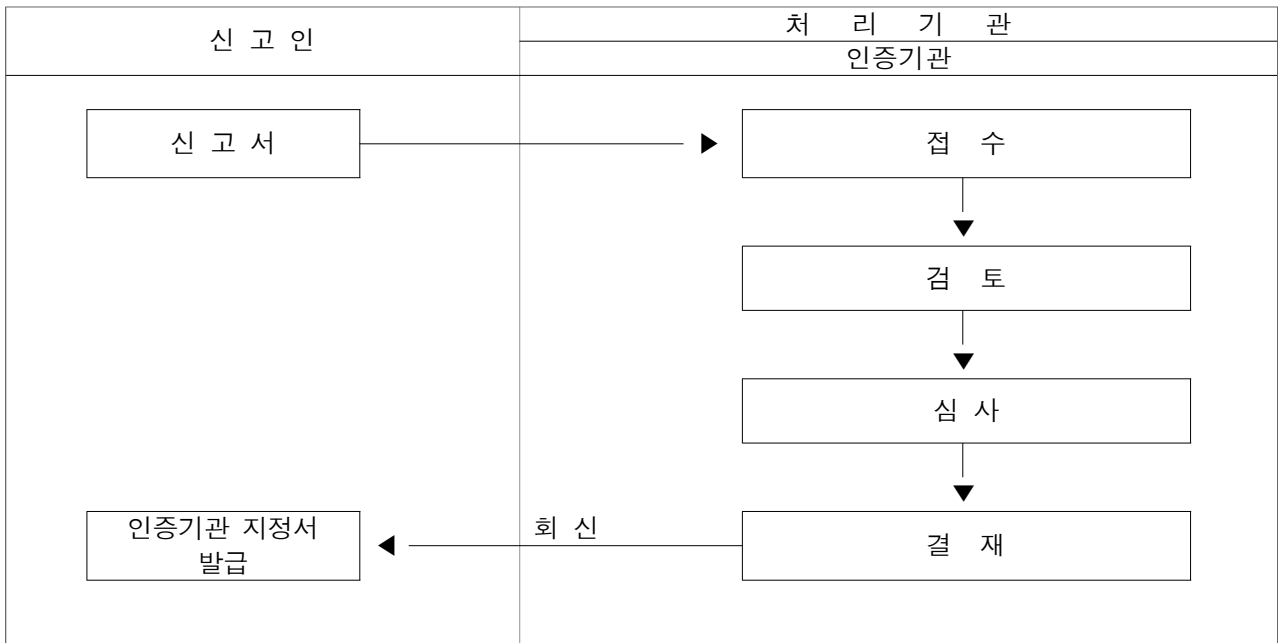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1.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법인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은 국적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3. 소재지란에는 기관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및 지방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적어야 합니다.
4. 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소리나는 대로 국어로 번역(소리나는 대로 번역해야 하며, 뜻도 혼역을 해서 안 됩니다)한 승계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해당 국가의 언어로 원어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업무의 범위란에는 승계 받은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습니다.
6. 인증기관 지정번호란에는 승계받은 인증기관의 지정번호를 적습니다.
7. 승계 사유란은 해당 승계 사유에 √표시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등급화</u> <u><신 설></u>	<u>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u> <u>제47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 증대상) ① 법 제42조의2제1항 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축산물</u> <u>가. 소(한우, 육우), 면양·염 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돼지, 닭, 오리 및 사슴에서 생산된 식육</u> <u>나. 소(젖소) 및 염소에서 생 산된 시유(시판우유)</u> <u>다. 닭, 오리 및 메추리에서 생산된 알</u> <u>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사업자가 취급하는 제품</u> <u>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 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제47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 증기준) ① 법 제42조의2제3항</u>
<u><신 설></u>	

<신 설>

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4(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신청)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인증품 취급 계획서
2. 별표 8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생산,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5.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24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등의 허가증·신고필증

제47조의5(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절차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일정과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제47조의4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47조의8에 따른 인증 변경 승인 신청

3. 제47조의10에 따른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47조의4, 제47조의8, 제47조의10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사업장(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 3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47조의6(재심사 신청 등) ① 인

증을 받지 못하여 법 제42조의3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서식의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인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42조의3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재심사 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47조의5를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인증심사 과정에 문

<신 설>

제가 없거나 생산 또는 취급 과정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등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인증심사한 자료로 재심사 할 수 있다.

제47조의7(인증서의 발급)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8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47조의4에 따른 인증 신청: 인증심사

2.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재심사

3. 제47조의8에 따른 인증 변경 승인 신청: 인증 변경승인 심사

4. 제47조의10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 인증 갱신심사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②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

<신 설>

제축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가 별표 7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품의 대량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내역이 적힌 별지 제60호서식의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를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47조의8(인증 변경승인 등) ①

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품목(별표 7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 품목을 같은 호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인증 사업장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61

<신 설>

<신 설>

호서식의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 원본

2.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7조의9(인증서의 재발급) 제47조의7제1항 또는 제47조의8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사유서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헐어 못 쓰게 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의10(인증의 갱신 등) ① 법 제4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갱신 및 인증품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53호서식의 인증신청서
또는 제54호서식의 인증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
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
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5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6호
서식의 인증품 취급 계획서
2. 별표 8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
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5.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인증 갱
신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하
며,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
른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

증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24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등의 허가증·신고필증

② 법 제42조의3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우수”, “양호”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을 말한다.

③ 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인증기관 외에 “보통”, “미흡” 등급을 받은 동일한 인증기관에서는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④ 인증사업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2조의4제2항

<신 설>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인증의 신청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 미리 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반환받아 인증업무를 새로 맡게 된 다른 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연장을 받지 아니하면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의11(인증의 갱신 등 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42조의4제

<신 설>

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심사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는 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등 재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6을 준용한다.

제47조의12(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실적을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년도 다음 해부

<신 설>

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의13(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① 법 제42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무항생제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무항생제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및 생산지를 별표 10의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 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열
·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판 또는 폼말에 무항생제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

<신 설>

<신 설>

른 무항생제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14(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처분의 기준·절차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7조의15(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
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제47조의16(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42조의8제1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
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17(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업무의 범위) 법 제42조의8제6
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
의 범위 :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
에 대한 인증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
업무 범위 : 대한민국에서 하
는 제1호에 따른 인증.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로
정한다.

<신 설>

제47조의18(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7조의15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47조의16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규정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

<신 설>

정 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19(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① 법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인증기관 지정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제47조의16에 따

<신 설>

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 지정 갱신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18을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
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인증기
관에 갱신 절차와 해당 기간까
지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갱신
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
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의20(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라 인증기
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
를 영 제17조의3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하
여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의 위
탁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신 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21(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신고 등) ①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42조의8 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②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8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6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신 설>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2. 인증업무규정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수리한 때와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7조의22(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① 법 제42조의 9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는 제품의 명칭·특성·생산방법·원재료 정보·품질정보 등을 나타내거나 알리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무항생제”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2. “Non Antibiotic” 등 외국어

<신 설>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보증의 표시는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의 표시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인증·보증의 표시

3.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증·보증의 표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 기준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23(인증품 및 인증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과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업자(이

하 “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법 제42조의10제1항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 판매장 또는 인증사업자등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
2.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하는 수시조사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잔류물질 검정조사
2. 인증품의 표시사항, 생산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기준에 맞는지 등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

한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6호의2서식의 조사 공무원증

2.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표시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5호의3서식의 인증심사원증

④ 법 제42조의10제5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인증사업자등에게 그 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42조의10제5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인증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6호서식의 인증품 재검사 신청서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조사 결과를 통보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재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 30일 이내에 동일한 시료(생산장소·품목·시기가 동일한 시료에 한정한다)에 대해 발급 받은 검사성적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검사항목이 동일한 검사성적서에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

2. 조사공무원 또는 인증심사원이 인증품의 시료수거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인증품의 시료수거 과정에 오

류가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
는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재
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1. 제5항제1호에 따른 재검사 :
검사 후 보관중인 시료에 대
한 검사

2. 제5항제2호에 따른 재검사 :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검사

3. 제5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
하는 시료를 검사

⑦ 인증사업자등은 제6항에 따
라 실시한 재검사 결과에 대해
서는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증품 조
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세부사
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신 설>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24(인증품 조치명령의 세
부기준, 압류 및 공표) ① 법 제
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취
소,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
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
세부 표시사항 변경 등 행정처
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1과 같
다.

② 법 제42조의10제10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해당 인증품을 압
류한 때에는 인증사업자들에게
별지 제67호서식의 압류증을 발
급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
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압류 대상 인증품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10제11항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25(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①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인증품 취급 계획서

2. 승계 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인증서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인증기관 승
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
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3.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4.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승계신고서를 제
출받을 때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승계신
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제47

<u>제47조의2</u> (생략) 제51조(수수료)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생략)	<u>조의18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u> <u>제47조의26</u> (현행 제47조의2와 같음) 제51조(수수료)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다.</u> ② (현행과 같음)
---	---